

-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2월 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2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2월 12일

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진흥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하고
-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변영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“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”를 “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 관한조례”로 조례제명 변경
-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용어의 정의 신설
-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신설
 - 정기시장은 대지가 1,000㎡ 이상
 - 임시시장은 대지가 330㎡ 이상

○ 법령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조항 폐지

• 제11조(보험가입)제2항

• 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제한)제1항1,5,8호

라. 참고사항

○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(정기시장등의 개설등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○ 이 개정조례 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장사용에 따른 보험가입과 사용허가 취소사유 중 실효성이 없는 일부 독소 조항을 삭제, 규제를 완화한 조례라 사료되며,

○ 또한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제정의 변경과 시장 개설기준 등 일부조항을 신설하고, 불합리한 조문배열을 재구성 정비한 것으로서,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